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23
----------	-------

발의연월일 : 2025. 8. 6.

발 의 자 : 허성무 · 김문수 · 최혁진
조인철 · 양문석 · 이재관
최민희 · 이수진 · 박민규
문정복 · 손명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특정 국가의 저가공세 심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주요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입국 다변화, 공동구매 등 행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물류비 보전, 재정지원, 세제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기존 제22조에서 규정한 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보완 수단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에 필요한 설비투자 · 공정개선 · 시험인증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의 자립성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경제안보품목의 물류비 지원, 수입국 다변화 촉진 등 기존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급망 안정화 수단을 구체화함(안 제27조의2 신설).
- 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 시 설비투자, 공정개선, 시험인증 등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조세 감면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7조의2 신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급망 안정화 및 국내 생산에 대한 직접적 지원) ①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특정 국가의 저가 공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생산 및 구매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확보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원자재, 부품, 소재의 대체 조달처 확보를 위한 물류비 지원
2. 제22조에 따른 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지원 또는 보완 조치
3. 국내 생산 기반 확대 및 설비 재편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제지원의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 제조 및 생산 과정에 직접 소요되는 원재료·부품·설비 구매 비

용

2. 생산공정 개선, 기술도입 및 설비 구축 등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

3. 생산 품목의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인증 등 관련 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안보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조세당국,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2(공급망 안정화 및 국내 생산에 대한 직접적 지원)</u> <u>①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특정 국가의 저가 공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생산 및 구매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확보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원자재, 부품, 소재의 대체 조달처 확보를 위한 물류비 지원</u> <u>2. 제22조에 따른 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지원 또는 보완 조치</u> <u>3. 국내 생산 기반 확대 및 설비 재편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u> <u>② 정부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제지원의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서</u>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 제조 및 생산 과정에 직접 소요되는 원재료·부품·설비 구매 비용

2. 생산공정 개선, 기술도입 및 설비 구축 등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

3. 생산 품목의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인증 등 관련 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안보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조세당국,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